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포장재 사용규제

Restraint of PVC Packaging Material

이재영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1. 서 언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정책의 하나인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은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순위(Waste Management Hierarchy)상 최상위 정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심이 원천적 감량화로 전환되고 있고 자원이 부족한 반면 국토 면적당 폐기물 부하량이 큰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양적 감량화 정책과 함께 유해성 감소 및 재활용성 제고 등 질적인 감량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예컨데 종전에는 재활용, 재사용이 용이한 유리, 종이포장재가 가벼운 합성수지재질로 바뀌어 무게기준으로는 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양만큼 감량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제는 폐기물의 재질에 따라 환경영향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폐기물의 성상 즉, 환경영향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적은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의 연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환경에 이바지하고자 '92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포장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3년 8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식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잡화류(화장품류, 세제류, 인형·완구류), 종합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1~2차) 등을 규제하였다.

또한 인형·완구류, 종합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계 포장재 및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코팅이나 라미네이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 하였으며 포장용기 재사용제품(Refill 제품)의 생산 권고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95년 2월에는 동 규칙을 개정하여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9년 2월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식품류, 화장품류, 선물셋트 등 종전 8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규제하던 것을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 의약부외품 및 의류까지 확대하였고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의 규제근거를 마련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3.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의 사용 규제

합성수지폐기물은 서로 다른 종류가 섞이면 재활용이 곤란하여 재활용을 위해서는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야 하나 기계선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선별도 인건비가 많이 들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포장재는 별도 분리가 곤란하여 재활용을 저해하고 소각시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1993년 8월부터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로 라미네이팅(첩합) 또는 코팅(도포)된 포장재는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포장용기의 라벨 등에 많이 쓰이는 PVC 수축포장재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3-1.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 사용규제 대상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포함)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3-2. 사용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제품포장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외의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변질방지 곤란 및 포장재의 터짐 등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칙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이 인정된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 및 석유중간제품(유분))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로서 액화한 것을 포함)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대한 약전에 수재로 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은 제외)

3) 동물유 및 식물유 :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4) 화공약품 및 농약

-화공약품 : 염류, 황산, 질산, 비료, 전지, 도금, 카이바이트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공정에 사용하거나 이러한 화학공업에서 생산된

약품

농약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 기타 동·식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이끼류 또는 잡목)에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기피제·유인제·전착제 및 약효증진제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냉동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

3-3. 위반시 행정조치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포함)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제품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받게되며 동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결 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자연환경은 무분별한 개발과 남용으로 인해 어느덧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다. 새로이 펼쳐진 21세기에 환경문제는 더 이상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의 문제, 즉 인간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다.

나아가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환경수준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포장산업의 경우도 이 시대적 흐름의 예외일 수는 없다. 과거에는 포장의 기능으로 ‘상품보

호(Protection), 취급의 용이(Handling Convenience), 판매촉진(Sales Promotion)’ 등이 기본적 기능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 기능 외에 ‘환경적 기능’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포장은 소비자가 그 내용물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이미 쓰레기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포장폐기물의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기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포장산업계에서도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포장재의 개발과 확산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

독 자 권 령 신 선

월간 포장재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권력을 신설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활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재 편집실
TEL : (02)835-9041